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928
----------	-------

발의연월일 : 2026. 2. 20.

발 의 자 : 김도읍 · 우재준 · 박형수
김소희 · 구자근 · 윤상현
김위상 · 김형동 · 안철수
이종배 · 서지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습지는 생태학적 보전가치는 물론 관광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습지 보전에만 주안점을 두고 규제 중심으로, 습지의 관광적 자원 활용은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한편, 람사르협약은 습지의 경제적·문화적·과학적·여가적 가치가 높은 자원임을 인정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경제에 중요한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관광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실제 전 세계적으로 람사르습지 2,263개 가운데 73%(1,660개)가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음(2017.3.기준).

또한, 국내에서도 생태탐방, 생태교육 등의 일환의 사업들을 일부 추진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습지를 관광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이에 습지의 생태 관찰 및 체험, 교육 등의 생태관광을 통해 습지의 생태학적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고 습지에 대한 인식을 고취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으로써 국제협약에 따른 습지의 현명한 활용 및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제3호).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나무로 만든 다리”를 “다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습지생태의 관찰·체험·교육 등을 위한 생태관광 시설

제13조제5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습지생태의 관찰·체험·교육 등 생태관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습지보전 · 이용시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습지의 보전 ·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습지보전 · 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습지보전 · 이용시설) ① - -----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u>나무로 만든 다리</u> , 교육 · 홍보 시설 및 안내 · 관리 시설 등으로서 습지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시설	3. <u>다리</u> ----- ----- -----
<u><신 설></u>	4. <u>습지생태의 관찰 · 체험 · 교육 등을 위한 생태관광 시설</u>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행위 제한) ① ~ ④ (생 략)	제13조(행위 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⑤ ----- ----- -----

경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u><신설></u> 3. (생략) ⑥ (생략)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습지생태의 관찰·체험·교육 등 생태관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u>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⑥ (현행과 같음)
---	--